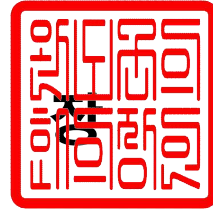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
「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5년 11월 6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

2. 발 의 자 : 지 민 의원

3. 제정이유

-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존감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, 제5조)
-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(안 제6조, 제7조)
- 비밀준수 및 중복지원의 금지 (안 제8조, 제9조)

5. 관련법령 :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5. 11. 6. ~ 2025. 11. 11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1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(전화: 061-550-593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 소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「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			
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			

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·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,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은둔형 외톨이”란 사회·경제·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가 완도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

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 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
2.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
3. 은둔형 외톨이 발굴·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
4.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
5.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
6.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원사업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은둔형 외톨이 발굴,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
2.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
3.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·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
4.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
5.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지원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,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협력체계)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,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준수)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중복지원의 금지)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